

碩 士 學 位 論 文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에 관한 실증적연구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강 희 수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會計學 專攻

윤 문 유

1992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강 희 수

윤 문 유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년 6월

윤문유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1992年 6月

#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II.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1. 중소기업조세지원의 이론적 근거	3
2.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6
1) 소득공제	6
2) 세액공제	8
3) 각종 준비금	13
4) 세액면제와 감면	16
5) 특별상각	19
III.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설계	
1. 가설의 설정	26
2. 조사 및 분석방법	27
1) 설문지 작성 및 구성변수	27
2)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29
3) 표본의 특성	29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30

IV.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실태 및 실증결과의 분석	
1.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31
1) 기업형태별 활용실태	31
2) 조세지원수단별 활용실태	33
2.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결과분석	35
3.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증결과의 분석	37
1) 기업별 인지도·활용도·효과와의 차이	37
2)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의 관계	41
3)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와의 관계	44
4)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 인지도·활용도·효과와의 상호관계	46
V. 요약 및 결론	48
<부    록>	
참고문헌	53
Summary	55
설    문    서	57



## 표 목 차

[표 1]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	5
[표 2] 소득공제대상과 공제범위 .....	7
[표 3] 투자세액공제만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 .....	9
[표 4]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중 택일하는 투자세액공제 .....	10
[표 5]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11
[표 6] 기타의 세액공제 .....	12
[표 7] 준비금의 설정대상자와 손금산입한도 .....	14
[표 8] 세액면제와 감면의 대상 및 범위 .....	17
[표 9] 설정된 변인과 설문항목 .....	28
[표 10] 지역별·기업형태별·업종별 표본현황 .....	30
[표 11] 기업형태별 활용실태 .....	32
[표 12] 조세지원수단별 활용실태 .....	34
[표 13]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 평균 .....	36
[표 14] 기업형태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 차이 .....	37
[표 15] 종업원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 차이 .....	39
[표 16] 자본금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 차이 .....	40
[표 17] 업종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 차이 .....	41
[표 18]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의 관계 .....	42
[표 19]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의 상관관계 .....	43
[표 20]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의 관계 .....	44
[표 21]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의 상관관계 .....	45
[표 22]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의 관계 .....	47
[표 23] 가설 검증 결과 .....	49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과거 한국의 경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위주의 편중된 경제정책을 전개한 결과 대기업의 성장과 발전된 상황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으므로 경쟁에도 약할 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능력면에서도 취약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국민경제 구조로 볼 때 고용증대를 확대하고 사회경제의 중산층을 형성하여 사회적인 안정세력을 구축하며 지역발전과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담당하여 국민경제생활에 상당한 비중으로 기여해오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은 많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지원 정책이 되어지므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성장이 이룩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중 중요한 요소인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한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서는 어느 만큼 이해하고 있으며 또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및 지원효과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세지원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앞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행 중소기업의 조세지원내용을 확인한 다음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내용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가설의 설정 및 자료분석방법을 기술하였고 제Ⅳ장에서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에 관한 실증결과를 가설 검증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중소기업에 관한 국내 서적과 논문을 포함하여 각종 통계자료, 정부간행물, 보고서, 세법 및 조세예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간행물등을 참고하였으며,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하여 배포 회수하였고, 면접방법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서 1991. 12. 31 현재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법인사업자 중 '90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한 법인, '90 사업년도 종합소득세신고서 서면조정신청자 및 실지조사신청자중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취합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 하였다.

## II.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고찰

### 1.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이론적 근거

중소기업의 개념은 대기업의 상대적인 표현으로 비교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지니며 대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의식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중소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종업원수·자산규모에 의한 양적기준을 주로 적용되고 있다.

종업원수나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만 하면 모든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사실상 구별이 어려워진다. 이는 종업원수나 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양적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의 자회사나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유형태나 경영형태에 따른 질적기준도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적용하여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중소기업정책의 적용대상과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sup>1)</sup>

중소기업을 세제상 지원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조세부담을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전제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소득세법 그 밖에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세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도매업·소매업·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또는 컴퓨터

1) 김종재, 「중소기업 경영론」, 박영사, 1991, p. 7.



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건설업은 200인, 도·소매업인 경우는 20인) 이하인 기업으로 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여야 하고,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 열거한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 이내의 기업이어야 한다.<sup>2)</sup> 이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종은 종업원수의 기준에만 해당하여도 중소기업으로 본다.<sup>3)</sup> 세법상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은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그리고 현행 세법상 조세지원제도는 직접감면이라 할 수 있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면제소득,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과 간접감면이라 할 수 있는 각종준비금, 특별감가상각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비과세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경제정책적인 목적에서 일정한 소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청 등의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에 다른 조세지원제도는 신청이나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조세지원은 일정한 요건과 적용대상·적용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법적용에 있어서는 일종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조세지원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뿐만이 아니라 주요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만을 다루기로 하므로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3)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 1...13.

[표 1]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업종		종업원수 ①	자산총액 ②	중소기업판정
제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	동법시행령 [별표 1] 인원	동법시행령 [별표 2]	①, ② 동시만족
	기타업종	300인 이하	" " "	
광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	동법시행령 [별표 1] 인원	" " "	" "
	기타업종	300인 이하	" " "	" "
건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	동법시행령 [별표 1] 인원		①만 충족
	기타업종	300인 이하		" "
운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	동법시행령 [별표 1] 인원		" "
	기타업종	300인 이하		" "
수산		300인 이하		" "
도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	동법시행령 [별표 1] 인원		" "
	기타업종	20인 이하		" "
소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업종	동법시행령 [별표 1] 인원		" "
	기타업종	20인 이하		" "
건축·공학및기술검사서비스		400인 이하		" "
컴퓨터조직및프로그램개발		200인 이하		" "

자료 :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 1992, p. 25.

## 2. 현행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내용

###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특정산업의 육성과 재무구조개선 등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특정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공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또한 대부분 신청 등의 절차를 요한다.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로는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중자소득공제가 있는 데, 조세감면규제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며<sup>4)</sup>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당해사업년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하게 된다.<sup>6)</sup>

소득공제의 대상자 및 그 공제범위를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4) 조달영, 「법인세법정해」, 조세통람사, 1991. 3, p.p. 140-141.

5)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 1 항.

6)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11...91.

[표 2] 소득공제대상과 공제범위

소득공제구분	소득공제대상	공제범위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sup>7)</sup>	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외국인에게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와 기술비법의 제공소득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sup>8)</sup>	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동법제 2조 <sup>9)</sup> 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나.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대상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sup>10)</sup>	가.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대외무역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2%와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중 작은 쪽 금액이 소득공제금액이다.

7)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3항.

8)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9)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기술용역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조사, 구매, 조달, 자문, 지도 등을 말한다.

10)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소득공제구분	소득공제대상	공제범위
증자소득공제 <sup>11)</sup>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법인 세법 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 에 규정된 기관투자자로부터 1992. 1. 1-1993. 12. 31기간내 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 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영리 내국법인(설립등기후의 2년 이내에 증자법인은 제외)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사업년도중 자본변경등기 월수 $\times \frac{12}{100}$ (우리사주종업원 공제율은 17%) 공제기간은 자본에 관한 변 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나 음달부터 24월간이다. (제조 업은 36월간)

##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기술 및 인력개발·신기술기업화·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등 특정  
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사업에 대한 지급금액·투자금액 또는 취득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부담  
을 경감시켜주는 제도<sup>12)</sup>이며, 감면세액이나 면제세액의 경우와 같이 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형식으로는 같다 하겠으나 감면세액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당해 사업년  
도에서 공제부족액이 생긴때에도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세액공제액은 지급금액  
·투자금액 또는 취득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세액을 산출한다. 당해 사업년도에서  
공제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할수 있다.<sup>13)</sup>

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로는 투자세

1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12) 조달영, 앞의 책, p. 877.

13)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제1항.

액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타의 세액공제가 있는 데, 여기서 투자세액공제인 경우에는 사업자산에 대하여 투자대상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중 택일할 수 있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세액공제의 대상과 그 공제범위를 요약하면 다음 [표 3],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3] 투자세액공제만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부분	대 상 자	세 액 공 제 범 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sup>14)</sup>	사업용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중소기업 (여기서 중고품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 (국산기자재 사용분 5%)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sup>15)</sup>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다음의 기업(호수에 관계없음) 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사업소득)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	주택취득금액(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고, 토지를 신규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대금을 포함한다)의 10%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sup>16)</sup>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기업	보육시설 취득금액(국산기자재 사용한 금액에 한하며, 토지매입대금 제외)×10%

14)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2.

15)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16)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7.

[표 4]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중 택일하는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구분	대 상 자	세 액 공 제 범 위
신기술기업화 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sup>17)</sup>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기업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3% (국산기자재 사용분 10%)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sup>18)</sup>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기업	이전한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금액(이전한 자산가액 포함)의 3% (국산기자재 사용분 10%)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sup>19)</sup>	아래시설에 투자한 기업 가.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시설 다. 공해방지시설 라. 산업재해예방시설 마.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바.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시험시설 사. 광산보안시설 아. 합리화시설	투자금액의 3% (국산기자재 사용분 10%) 다만,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중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국산기자재사용분 15%)

17)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18)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19)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세액공제 구분	대 상 자	세 액 공 제 범 위
임시투자세액공제 <sup>20)</sup>	1991. 1. 1부터 1992. 6. 30까지 제조업(선상수산제조업포함)·광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품질개선에 직접 사용 되는 기계장치를 신규취득하기 위한 투자	투자금액의 3% (국산기자재 사용분 10%)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sup>21)</sup>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양도하 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 여 본사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법 인본사용 건물취득가액중 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
산업합리화에 따 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 제 <sup>22)</sup>	지정산업이나 지정기업 중 산업 화 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 거나 주력업종을 위한 사업용자 산에 투자한 기업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6%(국산기자 재 사용분 10%)

[표 5]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구분	대 상 자	세 액 공 제 범 위
기숙사 투자에 대 한 투자세액 공제 <sup>23)</sup>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 거나 구입한 제조업·광업·운수 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택취득가액(국산기자재를 사 용한 금액에 한하고 토지를 신 규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대금 을 포함한다)의 10%

20)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2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2.

22)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3.

23)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표 6] 기타의 세액공제

세액공제구분	대 상 자	세 액 공 제 범 위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sup>24)</sup>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마.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바.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10%(중소기업과 직업훈련비는 15%)+(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10%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sup>25)</sup>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한 기업	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8%(국산기자재 10%) 나.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는 10%)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sup>26)</sup>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	외국법인세액 또는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24)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25)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

26) 소득세법 제76조, 법인세법 제24조의 3.

세액공제구분	대 상 자	세 액 공 제 범 위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sup>27)</sup>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및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상실되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공제대상법인세(소득세)×상실된 사업용자산가액/상실전 사업용총자산 -사업용 자산가액은 토지가 제외된 가액임. -자산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불명시는 시가)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 <sup>28)</sup>	월정급여 60만원 이하를 증권저축한 근로자	연간 증권저축금액×10%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 <sup>29)</sup>	소액주주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취득	취득전 저축금액 } 취득후 상환금액 } ×15% 기타주식 취득금액 }
기장세액공제 <sup>30)</sup>	일기장·간이장부 의무자	종합소득산출세액×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 ×10% 종합소득금액

### 3) 각종준비금

세법상 준비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아니나 특정사업에 대하여 장차 발생할 비용에 충당하거나 또는 시설개체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과세를 유예하였다가 차후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거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미 설정한 준비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별상각과 더불어 간접지원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sup>31)</sup>

27) 소득세법 제78조, 법인세법 제25조.

28)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29)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2.

30) 소득세법 제73조.

31) 조달영, 앞의 책, p. 252.

준비금은 세법상 반드시 결산조정에 의하여 장부상에 이를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손금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금은 기업회계상의 부채가 아닌 잉여금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법상에서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한하여서는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sup>32)</sup>

특히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은 세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가산되지는 않는다.<sup>33)</sup>

각종 준비금의 종류·설정대상자와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준비금의 설정대상자와 손금산입한도

준비금종류	대 상 자	손금산입한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sup>34)</sup>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도매업, 소매업,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에 해당하는 건축 공학 및 기술 검사 서비스업 또는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사업	손금계상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가액의 20% 이내
광업투자준비금 <sup>35)</sup>	광업을 영위하는 기업	당해 과세년도 광업수입금액 × 2% (해외자원개발사업은 4%)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 1항.

33)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3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35)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준비금종류	대상자	손금산입한도
기술개발준비금 <sup>36)</sup>	제조업, 광업, 건설업, EDPS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가. 일반법인 : 당해사업년도 수입금액의 3% 나. 기술집약형 사업 :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의 4%
수출손실준비금 <sup>37)</sup>	수출·군납 또는 용역사업·보세 가공업, 보세입가공업, 수출품입가공업, 수출품생산업, 국제입찰 납품업 및 국제입찰용역업 등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가. 외화수입금액의 1%와 외화 획득사업소득의 50%중 적은 금액 나. 다음의 수출사업은 외화수입금액의 1%를 가산함 -선박·기계수출사업 -중소기업 수출사업 -수출실적 10% 미달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용역사업 -연불 수출사업
해외시장개척준비금 <sup>38)</sup>	무역업, 기술용역사업, 해외항만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외화수입금액의 1%(선박기계 등의 수출과 특정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은 외화수입금액의 1%를 가산함)
해외사업손실준비금 <sup>39)</sup>	해외 건설업 및 일괄 수주방식에 의하여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외화수입금액의 2%
해외투자손실준비금 <sup>40)</sup>	외국법인의 주식등에 출자한 법인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해외투자액×사업년도의 월수/12×20%

36)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37)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38)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39)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40)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준비금종류	대상자	손금산입한도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투자준비금 <sup>41)</sup>	농공단지 또는 특산단지에서 소득원 개발사업 또는 농수산물 가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사업용자산가액×사업년도 월수/12×15%
지방이전준비금 <sup>42)</sup>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시설가액×사업년도 월수/12×10%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sup>43)</sup>	본사를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사업년도 월수/12×10%
투융자손실준비금 <sup>44)</sup>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당해 과세년도에 투융자한 금액×50%
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 <sup>45)</sup>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출전참가계약을 체결한 기업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또는 박람회 참가계약서상의 부지면적)의 제곱미터당 100만원

#### 4) 세액면제와 감면

중소기업의 창업, 해외자원개발, 공장의 지방분산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업 또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세액의 면제라 하고 면제되는 세액을 “면제세액”이라 하며 그중 일부를 경감하는 것을 세액의 감면이라 하고 이에 경감되는 세액을 “감면세액”이라 한다. 감면세액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sup>46)</sup>

세액면제과 감면의 대상자 및 범위는 다음 [표 8]과 같다.

4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2.

42)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43)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2.

44)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45)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3.

46) 조달영, 앞의 책, p. 849.

[표 8] 세액면제와 감면의 대상 및 범위

감면세액 구분	대 상 자	세액면제 및 감면범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sup>47)</sup>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가.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기업 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기업	가. 창업일이 속하는 년도와 다음 사업년도개시일부터 3년내 종료사업년도:법인세, 소득세 전액면제, 그다음 2년내 종료사업년도:소득세 50%감면 나.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50% 감면 다.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 라. 창업일로 부터 5년간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기술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sup>48)</sup>	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89. 1. 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47)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48)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 1항.

감면세액 구분	대 상 자	세액면제 및 감면범위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sup>49)</sup>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신규 공장설치 및 기존 공장을 농공 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이 속하는 년도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내 종료사업년도는 전액면제, 그 다음 2년내 종료사업년도는 50% 감면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sup>50)</sup>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안에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중소기업	입주일이 속하는 년도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 종료하는 사업년도는 50% 감면, 그 다음 2년내 종료사업년도는 30% 감면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sup>51)</sup>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의 사업용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제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sup>52)</sup> 등 감면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을 한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면제,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는 50% 감면

49)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50)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8.

5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2.

5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3.

## 5) 특별상각

특별상각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율에 의하여 계산한 일반상각범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제도의 내용, 기업의 수익상황 및 세율의 변동 등에 따라서 그 효과는 반드시 일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조세부담을 일정기간유예, 자기금융적 기능을 통해서 차입금상환이나 내부유보를 함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의 효과, 설비의 갱신 또는 확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sup>53)</sup>

이는 국가정책사업에의 투자를 적극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소득세법·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상각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는 할증상각과 일시상각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할증상각은 일반상각범위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범위액으로 한다. 특별상각에 있어서는 특별상각의 요건에 해당되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상각할 수 있으며, 사업년도중에 취득하여도 일반상각범위액을 월할계산하는 경우에도 특별상각이 가능하다.

일시상각은 특정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가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액으로 하여 취득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특별상각으로서 사업년도중에 취득하는 경우에 월할계산은 하지 아니하며, 취득한 사업년도에 일시상각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년도는 일반상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1) 광업·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상각<sup>54)</sup>

#### 가) 대상자산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

53) 조달영, 앞의 책, p. 571.

5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기계장치를 특별상각의 대상자산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의 제품을 가공하여 주는 사업은 제조업에 포함한다.<sup>55)</sup>

나) 상각범위액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년평균 매일 12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 상각범위액은 년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20%
- 년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30%
-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50%

(2) 국토건설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계장비에 대한 특별상각<sup>56)</sup>

가) 대상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대상자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토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계장비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특별상각대상 건설용 중기계장비 목록 중 중기관리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중기계장비에 한한다.<sup>57)</sup>

다) 상각범위액

년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을 그 사업을 발주한 관서 또는 국영기

55) 소득세법 기본봉칙 3-7-34...43, 법인세법 기본봉칙 2-15-29...21.

56)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5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업체의 장이 확인하는 것에 한하여 가산한다.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20%를 특별상각범위액으로 하고 있다.

(3) 에너지절약형 및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특별상각<sup>58)</sup>

가) 대상기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한 기업
- 공해방지시설을 한 기업

나) 대상자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중 조세감면 규제법령시행규칙 [별표 2]의 에너지절약시설<sup>59)</sup>과
- 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공해방지시설<sup>60)</sup>을 말한다.

그러나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에 의한 특별상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도 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각범위액

취득가액의 90%를 특별상각범위액으로 하고 있다.

(4)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sup>61)</sup>

58)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 8 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 8 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에너지절약형자재의 제조·설치·시공 및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5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 9 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 4 항.

6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 5 항.

가) 대상기업<sup>61)</sup>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기업

나) 대상자산

신기술기업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한다.

다) 상각범위액

일반감가상각범위의 30% (국산기자재는 50%)를 특별상각범위액으로 하고 있다.

(5)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등에 대한 특별상각<sup>62)</sup>

가) 대상기업<sup>63)</sup>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등에 투자한 기업

나) 대상자산<sup>64)</sup>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의 종류란 중 공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 및 측정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 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 (갑)상의 자산

다) 상각범위액

61)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

6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63)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

6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취득가액의 90%를 특별상각범위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sup>65)</sup>

(6) 외화획득 사업자산에 대한 특별상각<sup>67)</sup>

가) 대상기업

제조업·광업·수산업으로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 경우 수출사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외화획득사업을 말하므로 수출사업, 군납 또는 용역사업, 보세가공업, 수출품 임가공업, 수출품 생산업, 국제입찰 납품업 또는 국제입찰 하도급 등을 포함한다.

나) 대상자산

수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 (갑)상의 자산(운휴중의 자산은 제외)을 말한다.

다) 상각범위액<sup>68)</sup>

-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 이상인 경우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30%를 특별상각범위액으로 하며
- 외화획득사업의 업종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 미만인 경우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일반감가상각범위액 × 30% × 외화수입금액/총수입금액 × 2 = 특별상각범위액)

6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8항.

66)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8...18.

67)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68)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7) 광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sup>69)</sup>

가) 대상기업<sup>70)</sup>

다음의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1. 철광 2. 동광 3. 연광 4. 아연광 5. 텅크스텐광 6. 고령토 7. 황석 8. 금광
9. 은광 10. 몰리브덴광 11. 석탄 12. 흑연 13. 창연광 14. 망간 15. 형석
16. 납석 17. 석회석 18. 규석 19. 해분열 원료광물 20. 장석 21. 석면 22. 구조토
23. 사문석 24. 토륨광

그러나 광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사업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광업을 개시하는 사업용 자산은 광업의 개시일 또는 광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나) 대상자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석회광업 이외의 광업에 있어서는 광산용 사택을 제외)이며,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상의 자산(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sup>71)</sup>을 말한다.

다) 상각범위액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석회광업의 광산용 사택은 50%)를 특별상각범위액으로 하고 있다.

(8) 농어촌 소득원 개발산업에 대한 특별상각<sup>72)</sup>

가) 대상기업

69)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70)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71)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2...13.

7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 농공단지 또는 특산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건설, 운영하는 기업

나) 대상자산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상의 자산(운휴중에 있는 것 제외)을 말한다.<sup>73)</sup>

다) 상각범위액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를 특별감가상각액으로 하고 있다.

(9)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특별상각<sup>74)</sup>

가) 대상기업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기업

나) 대상자산

대도시 안에서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상의 자산(운휴중에 있는 것 제외)을 말한다.

다) 상각범위액

일반상각범위액의 30% (국산기자재는 50%)를 특별상각범위액으로 하고 있다.

73)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2...13.

74)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Ⅲ.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설계

#### 1. 가설의 설정

앞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본 실증적 연구에서는 먼저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취하려는 것으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 주요세제의 조세지원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주요세제의 세제지원제도가 세법상 요건 및 대상이 명시됨으로 인하여 기업유형별로 인지도, 활용도, 효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또 중소기업의 조직형태가 개인기업과 법인가업으로 구분되어 조세부담도 사업소득세와 법인세로 나누어서 부과되기 때문에 조직형태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기업규모가 큰 업체와 소기업과는 회계전담부서 설치여부, 투자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 또는 자본금규모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의 업종간에도 각각의 특성이 있고 적용요건과 대상자가 다르므로 그 차이를 각각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을 세분화했다.

가설1-1.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형태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효과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3.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효과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각 기업이 알고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활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3 : 조세지원효과가 큰 것은 조세지원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4 :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음에 따라, 조세지원효과가 클 수록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3, 가설4는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그 효과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든지 조세지원효과가 커야만이 각 기업에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이므로 인지도 및 조세지원효과가 높은 것이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지도·활용도·효과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세지원의 인지도와 지원효과가 조세지원의 활용도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검토하려고 한다.



## 2. 조사 및 분석방법

### 1) 설문지의 작성 및 구성변수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처음으로 작성된 설문내용에 타당성, 적절성, 설문에 대한 이해, 정확성, 응답의 가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확정된 각 변인별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은 평정자의 인식척도에 의하여 측정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배열해서 평가자가 해당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정된 변인과 설문항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설정된 변인과 설문항목

변인	설문지 문항	변인명
조직형태	A-2	V1
상시종업원수	A-3	V2
자본금규모	A-5	V3
세무회계처리실태	B-1	V4
인지도 소득공제	B-2 (1)	V5
세액공제	B-2 (2)	V6
각종준비금	B-2 (3)	V7
세액면제와 세액감면	B-2 (4)	V8
특별감가상각	B-2 (5)	V9
활용도 소득공제	B-3 (1)	V10
세액공제	B-3 (2)	V11
각종준비금	B-3 (3)	V12
세액면제와 세액감면	B-3 (4)	V13
특별감가상각	B-3 (5)	V14
조세지원제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B-4	V15
지원효과 소득공제	B-5 (1)	V16
세액공제	B-5 (2)	V17
각종준비금	B-5 (3)	V18
세액면제와 세액감면	B-5 (4)	V19
특별감가상각	B-5 (5)	V20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취득	B-6	V21
조세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B-7	V22
제주지역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확대되어야 할 조세지원제도	B-8	V23
	B-8	V24
업                  종	A-1	V25

## 2)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이 연구에 포함되는 표본은 1991. 12. 31현재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중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990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990귀속 사업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서면조정신고자 및 실지조사신청자중 세법상 중소기업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기업형태별·업종별·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설문지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설문조사는 1992. 5. 4부터 1992. 5. 20까지 17일간 우편조사법 및 직접방문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개업체에 대하여 설문지를 우송하여 당해 기업체의 경리책임자에게 응답하도록 의뢰하였다. 그 결과 95개기업체로 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47%를 나타냈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는 분석직전에 제외시킨 결과 실제로 분석에 이용된 설문서는 92개업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3) 표본의 특성

당초 설문지 대상은 기업형태별·업종별·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하였으나 설문지가 47%만이 회수됨에 따라 제주시지역에 편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91년 제주상공회의소 상의현황<sup>71)</sup>을 보면 지역별 상공업자현황에서 제주시 69.6%, 서귀포시 16.8%, 북제주군 6.7%, 남제주군 6.9%로 나타나 있어 중소기업대상자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종별로 살펴볼때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인 경우 북제주군에 행원농공단지, 남제주군 대정읍 일파리 농공단지가 조성되었다고 하나 입주기업이 많지 않으므로 해서 아직까지는 제주시지역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기업형태별·업종별 표본현황은 [표 10]과 같다.

71) 제주상공회의소, 「상의현황」, 제주상공회의소 조사부, 1992, p. 7.

[표 10] 지역별·기업형태별·업종별 표본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기업 형태 별	법 인	35	11	11	9	66 (71.8)
	개 인	12	6	5	3	26 (28.2)
	계	47	17	16	12	92
	구성비	51.1	18.5	17.4	13.0	100.0
업 종 별	제 조 업	11	4	6	4	25 (27.2)
	건 설 업	11	4	2	2	19 (20.7)
	운 수 업	10	3	3	3	19 (20.7)
	수 산 업					
	도 매 업	9	3	3	2	17 (18.4)
	소 매 업	6	3	2	1	12 (13.0)
	계	47	17	16	12	92
	구 성 비	51.1	18.5	17.4	13.0	100.0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제주지역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활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방법인 백분비와 평균이 이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 검증의 분석에 있어서는  $\chi^2$ 검증, ANOVA에 의한 F검증, 상관관계분석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

조사자료의 분석처리는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로 처리 하였는 데, 사용된 패키지는 SPSS / PC+이다.

## IV.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실태 및 실증결과의 분석

### 1.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 1) 기업형태별 활용실태

중소기업은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세부담도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를,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율체계도 다르게 하여 법인세의 세율은 각 사업년도 순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20%, 1억원 초과시는 34%를 적용하고 있고, 사업소득세의 세율은 각 사업년도 순소득이 400만원이하 5%에서 5,000만원 초과시 5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세율체계상 일정규모 이상의 순소득이 발생하는 개인기업은 법인기업보다 높은세율을 적용되게 된다. 이로서 기업형태별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표 11]에서 기업형태별로 조세지원의 활용실태를 보면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별로 활용하지 않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준비금·특별감가상각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고,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만이 대체로 활용하는 편이다.

[표 11] 기업형태별 활용실태

(%)

구분	기업 형태	전혀 활용 않음	별로 활용 않음	대 체 로 활 용	많 이 활 용	아주 많이 활 용	계
소득 공제	개 인	38.5 (10)	7.7 ( 2)	26.9 ( 7)	26.9 ( 7)		26
	법 인	13.7 ( 9)	9.1 ( 6)	36.3 (24)	33.3 (22)	7.6 (5)	66
세액 공제	개 인	11.5 ( 3)	7.7 ( 2)	46.2 (12)	26.9 ( 7)	7.7 (2)	26
	법 인	13.7 ( 9)	10.6 ( 7)	33.3 (22)	37.9 (25)	4.5 (3)	66
각종 준비금	개 인	42.3 (11)	30.8 ( 8)	26.9 ( 7)			26
	법 인	45.5 (30)	39.4 (26)	10.6 ( 7)	4.5 ( 3)		66
세액 감면	개 인	23.1 ( 6)	30.8 ( 8)	46.2 (12)			26
	법 인	37.9 (25)	25.8 (17)	27.3 (18)	3.0 ( 2)	6.0 (4)	66
특별 상각	개 인	57.7 (15)	30.8 ( 8)	11.5 ( 3)			26
	법 인	48.5 (32)	37.9 (25)	12.1 ( 8)	1.5 ( 1)		66

\* ( )안은 업체수임.

## 2) 조세지원수단별 활용실태

조세지원제도는 어느 기업이나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간 지원의 중립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조세지원에 대한 절세효과를 통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절감된 세액의 사내유보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정을 호전시켜 주는 효과를 지닌다.

설문조사결과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수단별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는 다음 [표 12]와 같이 기업이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공제(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이 비교적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공제의 경우 활용하는 업체수가 70.6%(65개업체)이고, 세액공제 77.2%(71개업체), 세액감면 39.1%(36개업체)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세무서의 1990사업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신고시 감면신청내용을 보면 중자소득공제 48개업체, 임시투자세액공제 5개업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중소기업 세액감면 각각 1개업체가 신청된 것으로 되어 있어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은 중자소득공제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일정기간 동안 조세를 유예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간접지원방식이라 할 수 있는 각종준비금 및 특별상각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준비금의 경우 활용하지 않는 업체수가 78.6%(75개업체)이고, 특별상각의 경우 86.9%(80개업체)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응답기업의 26.1%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라고 응답하였으며, 일정소득금액 또는 일정기준율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 별로 혜택이 없어서, 요건 및 절차가 까다로워서 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25.0%, 19.6%, 16.3%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20인 미만의 소기업이고 개인기업체가 많으므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결여 되어있고, 각종조세지원제도 내용이 어렵고,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를 세무사에 의존하고 있는 등 자체적인 세무회계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응답자

92업체중 85.9%가 세무사에 의존하고 있음)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2] 조세지원수단별 활용실태

구분	단위	전혀활용 않음	별로활용 않음	대체로 활용	많이 활용	아주많이 활용	계
소득공제	N	19	8	31	29	5	92
	%	20.7	8.7	33.7	31.5	5.4	100.0
세액공제	N	12	9	34	32	5	92
	%	13.0	9.8	37.0	34.8	5.4	100.0
각종준비금	N	41	34	14	3		92
	%	41.6	37.0	15.1	3.3		100.0
세액감면	N	31	25	30	2	4	92
	%	33.7	27.2	32.6	2.2	4.3	100.0
특별상각	N	47	33	11	1		92
	%	51.0	35.9	12.0	1.1		100.0
계	%	32.6	23.7	26.1	14.6	3.0	100.0

## 2.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결과분석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서를 기술통계방법인 평균에 의하여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13]이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효과·활용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인지도는 평균 2.5를 상회하고 있으나 활용도의 경우 평균 2.5에 미달하고 있으며, 효과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종업원규모별·자본금규모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인지도가 높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지원수단별로는 직접지원제도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이 간접지원제도인 각종준비금 및 특별상각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의 경우 종업원규모별·자본금규모별에 있어서는 기업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세지원수단별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의 경우 종업원규모별로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가장 높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세지원수단별에 있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조세지원수단별로 인지도·효과·활용도가 전부 높은 경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드러났다. 이는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우 직접지원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종준비금과 특별상각이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기업이 규모가 영세하여 이런 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13]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 평균

구 분		인 지 도	효 과	활 용 도
조세지원 수단별	소득공제	3.14	2.51	2.92
	세액공제	3.31	2.43	3.10
	각종준비금	2.51	1.40	1.77
	세액면제및감면	2.74	1.50	2.16
	특별감가상각	2.29	1.29	1.63
종업원 규모별	20인미만	2.63	1.74	2.27
	20인 - 30인미만	2.94	1.64	2.24
	31인 - 50인미만	3.11	2.05	2.47
	51인 - 100인미만	2.88	1.86	2.22
	100인 - 300인미만	3.00	2.07	2.60
자본금 규모별	5천만원미만	2.49	1.73	2.47
	5천만 - 1억원미만	2.59	1.74	2.12
	1억원 - 5억원미만	2.97	1.86	2.42
	5억원이상	2.98	1.97	2.28
업 종 별	제조업	3.10	1.98	2.51
	건설업	2.82	1.78	2.18
	운수업	2.67	1.85	2.39
	도매업	2.78	1.68	2.04
	소매업	2.38	1.72	2.42

### 3.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증결과의 분석

#### 1) 기업별 인지도·활용도·효과와의 차이

##### ① 기업형태별 인지도·활용도·효과와의 차이

<가설 1-1>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효과·활용도에 대해서는 기업형태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표 14]는 <가설 1-1>를 검증하기 위해 기업형태별로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활용도·효과차이를 ANOVA에 의한 F검증 결과로 나타내고 있다.

기업형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었고, 개인기업이 26개업체이고 법인기업이 66개업체로 구성되었다. 검증결과 기업형태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차이는 (F치=3.269, p=0.074)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기업형태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 차이

구분	변량	$\chi^2$	자유도	평균자승	F-Value	p
인지도	집단간	1.450	1	1.450	3.269	0.074*
	집단내	39.910	90	0.443		
	전체	41.360	91	0.455		
효과	집단간	0.251	1	0.251	0.867	0.354
	집단내	26.105	90	0.290		
	전체	26.357	91	0.290		
활용도	집단간	0.272	1	0.272	0.665	0.417
	집단내	36.780	90	0.409		
	전체	37.052	91	0.407		

\* p<0.1, \*\* p<0.05, \*\*\* p<0.01

## ② 기업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의 차이

<가설 1-2>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효과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표 15]는 종업원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에 대한 차이를, [표 16]는 자본금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종업원규모별 기준은 현행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며, 종업원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자원인 동시에 그 규모가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되기가 쉬워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규모에 따라 회계전문부서 설치여부가 달라지므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효과·활용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종업원규모별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 인지도·효과·활용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인 미만의 소기업집단과 20인 이상의 중기업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0인 미만의 기업집단은 46개업체이고, 20인 이상의 기업집단은 46개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집단간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효과·활용도에 대한 차이를 ANOVA에 의하여 검증하려 한다.

종업원규모별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표 15]에서 보면 ( $F$ 치=6.149,  $p=0.015$ ) 유의도  $p=0.05$  수준에서 유의비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업원규모별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활용도에 있어서는 두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15] 종업원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 차이

구분	변량	$\chi^2$	자유도	평균자승	F-Value	p
인지도	집단간	2.649	1	2.645	6.149	0.015**
	집단내	38.415	90	0.430		
	전체	41.360	91	0.455		
효과	집단간	0.563	1	0.563	1.966	0.164
	집단내	25.793	90	0.287		
	전체	26.357	91	0.290		
활용도	집단간	0.174	1	0.174	0.424	0.516
	집단내	36.878	90	0.410		
	전체	37.052	91	0.407		

\*  $p < 0.1$ , \*\*  $p < 0.05$ , \*\*\*  $p < 0.01$ .

자본금은 기업에 있어서 투자원천이므로 자본금이 규모에 따라 투자액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본금규모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본금규모가 1억원 미만인 기업집단과 1억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9개업체가 1억원 미만의 집단이고, 1억원 이상의 기업이 53개업체로 구성되어 이들 집단간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효과·활용도의 차이를 유의수준에 의해서 검증하려고 한다.

자본금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 차이는 1억원 미만 기업 39개업체의 평균 2.56이며, 1억원 이상 기업 53개업체의 평균 2.97로 자본금규모가 큰 기업이 상대적으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유의수준에 의해서 조세지원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ANOVA에 의한 [표 16]에서 ( $F$ 치=9.019,  $p=0.003$ )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자본금규모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 차이

구분	변량	$\chi^2$	자유도	평균자승	F-Value	p
인지도	집단간	3.767	1	3.767	9.019	0.003***
	집단내	37.593	90	0.418		
	전체	41.360	91	0.455		
효과	집단간	0.529	1	0.529	1.844	0.178
	집단내	25.827	90	0.280		
	전체	26.357	91	0.290		
활용도	집단간	0.653	1	0.635	1.570	0.213
	집단내	36.417	90	0.405		
	전체	37.052	91	0.407		

\* p<0.1, \*\* p<0.05, \*\*\* p<0.01.

③ 업종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 차이

<가설 1-3>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효과·활용도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한 결과가 [표 17]에 제시되고 있다.

업종구분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집단1, 운수업과 도매업·소매업을 집단2로 구분하였다. 집단1은 조세지원대상과 범위가 넓은 업종이고, 집단2는 조세지원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좁은 업종으로 구성하였다. 집단1에 속하는 기업체의 수는 44개업체이고, 집단2에 속하는 기업체의 수는 48개업체이다. 조세지원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집단1의 평균치가 2.98이고, 집단2의 평균치는 2.68로서 제조업과 건설업이 경우가 운수업 등 집단2의 업종들보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의수준에 의해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ANOVA에 의해서 [표 17]에서 보면 (F치=6.162, p=0.015) 유의도 p=0.05 수준에서 두 집단간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으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와 활용도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업종별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의 차이

구분	변량	$\chi^2$	자유도	평균자승	F-Value	p
인지도	집단간	2.650	1	2.650	6.162	0.015**
	집단내	38.710	90	0.430		
	전체	41.360	91	0.455		
효과	집단간	0.403	1	0.403	1.399	0.240
	집단내	25.953	90	0.280		
	전체	26.357	91	0.290		
활용도	집단간	0.218	1	0.218	0.532	0.468
	집단내	36.835	90	0.409		
	전체	37.052	91	0.407		

\* p<0.1, \*\* p<0.05, \*\*\* p<0.01.

## 2)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의 관계

<가설 2>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활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으로 변량분석을 위하여 인지도와 관련하여 기업을 두개의 집단을 나누었으며 집단1은 조세지원제도를 모르는 기업집단을, 집단2는 조세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집단1에는 29개업체가 속해 있고, 집단2에는 63개업체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1에서는 활용도의 평균은 2.00로 나타났으며, 집단2에서의 활용도의 평균은 2.46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세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집단2가 조세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간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따른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ANOVA에 의한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표 18]에 제시되고 있다.

유의수준 검증을 위하여 [표 18]에서 보면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관련하여 집단1의 기업집단과 집단2의 기업집단간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ANOVA에 의하여 (F치=11.711, p=0.001) 유의도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따라 그 활용도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파악되었으며, 이로서 <가설 2>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 18]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의 관계

변 량	$\chi^2$	자 유 도	평균자승	F-Value	p
집 단 간	4.266	1	4.266	11.711	0.001***
집 단 내	32.786	90	0.364		
전 체	37.052	91	0.407		

\*  $p < 0.1$ , \*\*  $p < 0.05$ , \*\*\*  $p < 0.01$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수단별로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표 19]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조세지원수단별로 인지도와 활용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인지도는 활용도의 소득공제  $p=0.000$ , 세액공제  $p=0.017$ 로서 소득공제  $p=0.01$ , 세액공제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으며, 세액공제의 인지도는 활용도의 소득공제  $p=0.039$ , 세액공제  $p=0.000$ 로서 소득공제는  $p=0.05$  수준에서, 세액공제는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각종준비금의 인지도는 활용도의 소득공제  $p=0.001$ , 세액공제  $p=0.000$ , 각종준비금  $p=0.043$ , 세액면제 및 감면  $p=0.006$ 으로서 소득공제  $p=0.01$  수준에서 세액공제  $p=0.01$ , 각종준비금  $p=0.05$ , 세액면제 및 감면  $p=0.1$  수준에서 유의하고, 세액면제 및 감면의 인지도는 활용도의 세액공제  $p=0.002$ , 세액면제 및 감면  $p=0.007$ 로서 세액공제  $p=0.01$ , 세액면제 및 감면  $p=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특별상각의 인지도는 활용도의 소득공제  $p=0.006$ ,

세액공제  $p=0.000$ , 특별상각  $p=0.001$ 로서 소득공제  $p=0.01$  수준에서, 세액공제  $p=0.01$ , 특별상각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은 각종준비금, 특별상각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에 의한 조세 지원보다는 조세감면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고 직접적인 감면혜택을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직접지원방식에 의한 조세지원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9]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의 상관관계


활용도 인지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각종준비금	세액감면 등	특별상각
소득공제	0.5340 (92) $p=0.000^{***}$	0.2488 (92) $p=0.017^{**}$	-0.0293 (92) $p=0.781$	0.0099 (92) $p=0.925$	-0.1003 (92) $p=0.341$
세액공제	0.2155 (92) $p=0.039^{**}$	0.4739 (92) $p=0.000^{***}$	0.0625 (92) $p=0.554$	0.0844 (92) $p=0.424$	-0.0636 (92) $p=0.547$
각종준비금	0.3369 (92) $p=0.001^{***}$	0.4527 (92) $p=0.000^{***}$	-0.2114 (92) $p=0.043^{**}$	0.2862 (92) $p=0.006^{***}$	-0.1413 (92) $p=0.179$
세액감면	0.1773 (92) $p=0.091^*$	0.3244 (92) $p=0.002^{***}$	-0.0963 (92) $p=0.360$	0.2788 (92) $p=0.007$	0.1170 (92) $p=0.267$
특별상각	0.2859 (92) $p=0.006^{***}$	0.3705 (92) $p=0.000^{***}$	-0.0962 (92) $p=0.362$	0.2209 (92) $p=0.293$	0.3312 (92) $p=0.001^{***}$



### 3)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와의 관계

<가설 3>은 “조세지원효과가 큰 것은 조세지원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세지원효과에 대해 분석대상기업 92개 업체중에서 효과가 없거나 해당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79개업체이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13개업체로 구성되었다. 효과가 없거나 해당없다고 응답한 기업집단에서 조세지원을 활용한 점수 평균은 2.26이고, 지원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기업집단에서 조세지원을 활용한 점수 평균은 2.68로서 조세지원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조세지원의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ANOVA에 의한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표 20]는 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0]에서 보면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작은 기업집단의 효과가 큰 기업집단간에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차이는  $p=0.028$ 로서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가설 3>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20]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와의관계

변 량	$\chi^2$	자 유 도	평균자승	F-Value	p
집 단 간	1.957	1	1.957	5.018	0.028**
집 단 내	35.095	90	0.390		
전 체	37.052	91	0.407		

\*  $p<0.1$ , \*\*  $p<0.05$ , \*\*\*  $p<0.01$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수단별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와의 상관관계를 [표 21]와 같이 검증하였다. [표 21]에서 보면

소득공제의 효과는 활용도의 소득공제  $p=0.000$ , 세액공제  $p=0.001$ 로서 소득공제  $p=0.01$  수준에서, 세액공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액공제의 효과는 활용도의 소득공제 유의도  $p=0.001$ , 세액공제  $p=0.000$ 로서 소득공제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세액공제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각종준비금의 효과는 활용도의 각종준비금  $p=0.000$ , 특별상각  $p=0.001$ 로서 각종준비금의 유의도  $p=0.01$  수준에서, 특별상각의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세액면제 및 감면의 효과는 활용도의 세액공제  $p=0.025$ , 세액면제 및 감면  $p=0.000$ 으로서 세액공제  $p=0.05$  수준에서, 세액면제 및 감면  $p=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차이가 있고, 특별상각의 효과는 활용도의 특별상각  $p=0.000$ 으로서 특별상각의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차이가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우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큰 조세지원수단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표 21]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활용도의 상관관계

활용도 인지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각종준비금	세액감면 등	특별상각
소득공제	0.6504 (92) $p=0.000^{***}$	0.3384 (92) $p=0.001^{***}$	-0.0087 (92) $p=0.935$	0.1332 (92) $p=0.206$	-0.0218 (92) $p=0.836$
세액공제	0.3302 (92) $p=0.001^{***}$	0.6776 (92) $p=0.000^{***}$	0.0015 (92) $p=0.988$	0.2970 (92) $p=0.004^{***}$	-0.1873 (92) $p=0.074^*$

활용도 인지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각종준비금	세액감면 등	특별상각
각종준비금	-0.0024 (92) p=0.982	0.1328 (92) p=0.207	0.6058 (92) p=0.000***	0.1595 (92) p=0.129	0.3492 (92) p=0.001***
세액면제 및 감면	0.0361 (92) p=0.733	0.2340 (92) p=0.025**	0.0376 (92) p=0.722	0.5215 (92) p=0.000***	0.0169 (92) p=0.873
특별상각	0.1951 (92) p=0.062*	0.1762 (92) p=0.093*	0.2041 (92) p=0.051*	0.1516 (92) p=0.149	0.5096 (92) p=0.000

\* p<0.1, \*\* p<0.05, \*\*\* p<0.01

#### 4) 조세지원제도에 있어서 인지도·효과·활용도의 상호관계

<가설 4>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에 따라, 조세지원효과가 클 수록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는 더 높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는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다.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와 독립변수인 인지도와 조세지원효과에 대한 이원변량분석(2-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결과가 [표 22]에 요약하여 제시되고 있다.

[표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효과(p=0.438)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독립변수들의 수효과 간에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다.

상호작용에 의한 변량은 주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오차변량으로도 처리될 수 없는 변량이다. 즉 상호작용변량은 주효과변량이 제거된 후 개별집단들 사이에 나타나

는 비오차변량(Nonerror Variance)을 말한다. 달리 말해 상호작용효과는 여러 주효과 조합의 총합이 아니라, 이런 총합 이외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비오차효과(Nonerror Effect)이다.<sup>75)</sup>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가설 4>는 채택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효과·활용도의 관계

구 분	$\chi^2$	자 유 도	평균자승	F-Value	p
주 효과	5.829		2.914	8.259	0.001***
인 지 도	3.872	1	3.872		
효 과	1.563	1	1.563		
상 호 작 용 효 과					
인 지 도 × 효 과	0.171	1	0.171	0.486	0.488
집 단 대	31.052	88	0.353		
전 체	37.052	91	0.407		

\* p<0.1, \*\* p<0.05, \*\*\* p<0.01.

75) 오택섭, 「사회과학데이터 분석법」, 나남, 1990. p. 166.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에 관해서 제주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효과·활용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에 의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표 23]와 같다.

(1)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높으며, 종업원규모별에 있어서는 20인 미만 소기업보다는 20인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이 인지도가 높고, 자본금규모에 있어서도 규모가 큰 기업이 인지도가 높다. 업종별인 경우도 제조업과 건설업이 운수업·도매업과 소매업보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2)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기업집단이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효과가 큰 기업집단이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세지원수단별로 보면 직접지원방식인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면제와 감면이 인지도, 활용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간접지원방식인 각종준비금·특별상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구분	F-Value	p	
가설 1-1. 기업형태별 인지도·활용도·효과간의 관련성	인 지 도	3.269	0.074*	채 택
	효 과	0.867	0.354	기 각
	활 용 도	0.665	0.417	기 각
가설 1-2. 자본금규모별 인지도·활용도·효과간의 관련성	인 지 도	9.019	0.003***	채 택
	효 과	1.844	0.178	기 각
	활 용 도	1.570	0.213	기 각
가설 1-3. 업종별 인지도·활용도·효과간에 관련성	인 지 도	6.162	0.015**	채 택
	효 과	1.399	0.240	기 각
	활 용 도	0.532	0.468	기 각
가설 2. 인지도와 활용도의 관련성		11.711	0.001***	채 택
가설 3. 효과와 활용도의 관련성		5.018	0.028**	채 택
가설 4. 인지도·효과와 활용도와 의 관련성		0.486	0.488	기 각

\* p<0.1, \*\* p<0.05, \*\*\* p<0.01.

조세지원제도는 기업간 기업의 중립성이 높아 요건만 갖추면 광범위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고, 금융자유화 및 금융시장의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불가피해질 금융정책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므로써 향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중요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결과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조세지원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요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지원제도 활용도 제고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조세지원을 통한 투자유인효과를 높이고 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준비금·특별상각과 같은 간접지원방식보다는 대부분이 선호하고 있는 세액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 등과 같은 직접지원방식에 의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및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향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조세지원제도가 대부분 직접적인 세부담 경감효과가 적고 세제지원에 따르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때문에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

셋째, 한나라의 경제정책은 그 나라의 고유한 경제적 특성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도 그 나라에 경제적 현실에 맞게 시행하여야 하겠다. 다른 지원제도와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조세지원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면 설비투자인 경우를 보면 설비투자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자금이나 자산상태가 좋아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자금조달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융통하게 되는 데 이런 경우 중소기업은 담보능력 및 신용부족, 절차상의 까다로움 등으로 결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자체연구개발력이 미약할 실정이며 기술개발의 수준은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다른 지원정책과 연관하여 지원하여야만 기술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극히 형식적인 제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넷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경영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납세수준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그 자체도 납세수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있어서 세무행정적 측면의 기업에 어려움은 사실상 많겠으나 몇가지만 살펴보면 각종세무보고 및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부기장이 필수적인 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리담당자가 전문세무지식이 미흡하고 또는 기장, 각종신고, 세금계산서 교부 등 어려운 세무회계절차로 인하여 세무처리에 대한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또한 현행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조세지원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서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먼저 조세지원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겠고 지원제도의 혜택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절차를 단순화하고 세무지도와 홍보 등 세무회계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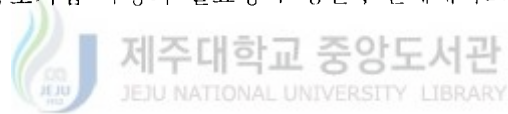
여섯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있어서 업종간, 지역별로 그 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조세지원이 되어져야 하겠다. 한편 기업은 각종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계획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실무에 있어서도 이러한 절세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관리자는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한 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종재 ; 「중소기업 경영론」, 박영사, 1991.
- 조관행 ; 「중소기업 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1991.
- 조달영 ; 「법인세법정해」, 조세통람사, 1991.
- 김재역·신찬수 ; 「세무관리론」, 조세통람사, 1991.
- 신찬수 ; 「최신세무회계」, 조세통람사, 1991.
- 박충환 ; 「중소기업의 세제지원과 법인전환 및 기업통합」, 한국세무경영사, 1991.
- 이만우 ; 「세 법」, 박영사, 1992.
- 삼일회계법인 ; 「국세편·삼일총서」, 삼일회계법인, 1991.
- 세무공무원교육원 ; 「조세감면규제법」, 세무공무원교육원, 1991.
- \_\_\_\_\_ ; 「'92 조세편람」, 조세통람사, 1991.
- 국세청 ; 「'92 법인세 신고실무」, 국세청, 1992.
-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1991.
- 중소기업은행조사부 ; 「기은조사월보」, 중소기업은행, 1991.
- 산업연구원 ; 「월간 산업동향」, 산업연구원, 1991.
- 제주상공회의소조사부 ; 「상의 현황」, 제주상공회의소, 1991, 1992.
- 제주상공회의소조사부 ; 「제주기업총람」, 제주상공회의소, 1992.
- 곽태원·이계식 ; 「조세정책과 세제발전」, 한국개발연구원, 1986.
- 이만희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정운서 ; “중소기업세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광정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정용근 ;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유영경 ;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박홍순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배봉오 ; “중소기업육성을 지원세제의 변천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백낙기·양현봉 ;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와 효과분석”, 「중소기업연구」, 제13권 제 2 호, 한국중소기업학회, 1991.
- 김정수 ; “중소기업의 세무회계의 실태와 개선방향”, 「회계와 세무」 1991.
- 유석근 ; “조세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기만중 ; “영세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과 방안”,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Summary>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Beneficial Taxation System

– Emphasis 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firms in Cheju region –

By Yoon moon – You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HNG HEE – SOO)*

While the role,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firms in Korea is rising in their importance, those firms in Cheju region are with many problems such as lack of capital structure, tax systems, and technical knowledge etc.

Those problems of the small and medium firms in Cheju region must be solv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beneficial taxation system. On the light of the abo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ax system with regard to small and medium business firms.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ognitive knowledge, effectiveness and application of the beneficial tax syst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axes law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firms was examined in the theoretical section.

2. In the empirical section, 92 sample firm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respondents which are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firms in Cheju region.

Statistical analyses, such as frequency, crosstabs, correlation and ANOVA, were conducted using SPSS/PC<sup>+</sup> program.

Three hypothe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among cognitive knowledge, effectiveness and application of the beneficial tax system were developed and tested.

3.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1) The cognitive knowledge was relatively higher for th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s, medium firms, higher capital fi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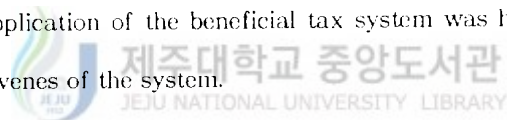
(2) The effectiveness of the beneficial tax system was higher for the firms with higher cognitive knowledge.

(3) The application of the beneficial tax system was higher for the firms with mor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4.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in the utiliz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beneficial tax system fo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firms.

(1) Direct support system, rather than indirect support system, should be emphasized.

(2) The procedure of the beneficial taxation system should be simplified.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지역 중소기업이 바라는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을 제시하여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학문적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처리 될 뿐이므로 개인적인 사항은 일체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회신용 봉투에 넣어 1992년 5월 16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5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지도교수 강 희 수

대학원생 윤 문 유 드림

## <일반사항>

1. 귀사의 주요 업종은 업태 ( ) 종목 ( )
2. 귀사의 조직형태는?
  - 1) 개인기업 2) 주식회사 3) 합자회사 4) 합명회사 5) 유한회사
3. 귀사의 상시종업원수는 몇명입니까?
  - 1) 20인 이하 2) 21~30인 3) 31~50인 4) 51~100인
  - 5) 10~300인 6) 300인 이상
4. 귀사의 90년 말 자산총액은 얼마입니까? ( )
5. 귀사의 90년 말 현재 자본금 규모는 얼마입니까?
  - 1) 5천만원미만 2) 5천만~1억원미만 3) 1억~5억원미만 4) 5억원이상
6. 귀사의 90년 매출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은 얼마입니까?
  - 1) 매출액 (                      천원) 2) 소득금액 (                      천원)
  - 3) 과세표준(                      천원) 4) 총부담세액(                      천원)

\*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로서 가산세, 방위세가 제외된 세액임.
7. 귀하의 담당업무부서는 어디입니까?
  - 1) 회계업무부서 2) 총무부서 3) 관리부서 4) 기타 (                      )
8. 귀하가 회계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몇년입니까?
  - 1) 2년이하 2) 3~5년 3) 6~10년 4) 10년이상
9. 귀하가 현금무처에 근무한 기간은 몇년입니까?
  - 1) 2년이하 2)3~5년 3) 6~10년 4) 10년이상

## < 활용실태 >

아래내용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1. 귀사의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1) 자체기장처리하고 자체결산조정하고 있다. (     )
- 2) 자체기장처리하고 결산조정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     )
- 3)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기장·결산조정 전부를 위탁하고 있다. (     )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래 3.의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참조하여 귀하가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각 수단별로 “매우 많이 알고 있다(5), 많이 알고 있다(4),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3) 모르는 편이다(2), 아주 모르는 편이다(1)”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소득공제	5	4	3	2	1
2) 세액공제	5	4	3	2	1
3) 각종준비금	5	4	3	2	1
4) 세액면제와 감면	5	4	3	2	1
5) 특별감가상각	5	4	3	2	1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하고 계신다면 조세지원수단별·각 항목별로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다(5),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4), 대체로 활용하는 편이다(3) 별로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2), 전혀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1)”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소득공제	5	————	4	————	3	————	2	————	1
2) 세액공제	5	————	4	————	3	————	2	————	1
3) 각종준비금	5	————	4	————	3	————	2	————	1
4) 세액면제와 감면	5	————	4	————	3	————	2	————	1
5) 특별감가상각	5	————	4	————	3	————	2	————	1

1) 소득공제항목 중

가)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    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  
 다)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    라) 증가소득공제( )

2) 세액공제항목 중

가)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나) 사원용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 )  
 다) 신기술기업화 투자세액공제( )    라) 임시투자세액공제( )  
 마)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 )    바) 법인본사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 )  
 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아)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투자 세액공제( )  
 자) 기숙사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차)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카)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타) 기장세액공제( )  
 파)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 )



3) 각종준비금항목 중

- 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나) 광업투자준비금( )
- 다)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투자준비금( )
- 라) 기술개발준비금( )                              마) 지방이전준비금( )
- 바)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              사) 수출손실준비금( )
- 아)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참가준비금( )
- 자)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차) 해외사업손실준비금( )
- 카) 투융자손실준비금( )

4) 세액면제와 감면항목 중

- 가) 창업중소기업감면( )                      나) 기술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 다) 농공지구 입주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
- 라)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마)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5) 특별감가상각항목 중

- 가) 광업·제조업의 기계설비 특별상각( )
- 나) 국토건설사업의 기계장비 특별상각( )
- 다) 에너지절약형 및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
- 라)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 특별상각( )
- 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특별상각( )
- 바) 외화획득사업자산 특별상각( )              사) 광업용자산 특별상각( )
- 아)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특별상각( )
- 자) 지방이전사업자산 특별상각( )

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 1) 가장처리방법을 몰라서 ( )
- 2) 결손이 발생되어서 ( )
- 3)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 )
- 4) 별로 혜택이 없기 때문에 ( )
- 5) 일정소득금액 또는 일정기준율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 )
- 6)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 )

5. 위의 3.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였다면 귀 업체에 지원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효과정도에 따라 (3.에서 활용하지 않는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우 효과가 컸다(5), 기대보다 효과가 컸다(4), 대체로 효과적이었다(3), 기대보다 효과가 적었다(2), 전혀 효과가 없었다(1)”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   |
|-------------|---|------|---|------|---|------|---|------|---|
| 1) 소득공제     | 5 | ———— | 4 | ———— | 3 | ———— | 2 | ———— | 1 |
| 2) 세액공제     | 5 | ———— | 4 | ———— | 3 | ———— | 2 | ———— | 1 |
| 3) 각종준비금    | 5 | ———— | 4 | ———— | 3 | ———— | 2 | ———— | 1 |
| 4) 세액면제와 감면 | 5 | ———— | 4 | ———— | 3 | ———— | 2 | ———— | 1 |
| 5) 특별감가상각   | 5 | ———— | 4 | ———— | 3 | ———— | 2 | ———— | 1 |

6. 귀하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셨습니다?

- 1) 전문가·업계지의 구독으로 (     )
- 2)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지도로 (     )
- 3) 조합·협회 등 단체에서의 연수로 (     )
- 4) 세무서 등 정부기관의 지도로 (     )
- 5) 상공회의소 등 기업지도기관의 지도로 (     )

7.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
- 2) 지원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     )
- 3) 세무간섭배제 등 행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
- 4) 직접감면방법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     )
- 5) 지역별로 조세지원을 차등화 하여야 한다. (     )

8. 제주도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확대되어야 할 조세지원은 어떤 것이라 생각되는지요? 2가지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     )
- 2)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지원 (     )
- 3)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     )
- 4) 수출 등 외화획득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     )
- 5)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     )
- 6) 산업합리화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
- 7) 협동화 및 계열화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